

의안 번호	제 39 호
의결년월일	1998. 11. (제 79 회)

의 결 사 항
원안가결

보은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제 출 자	보 은 군 수
제 출 년 월 일	1998. 11. 24

기획감사실장 심사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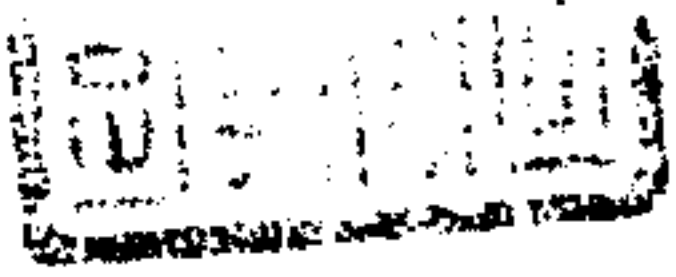


보은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의 안	39
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8. 11. 2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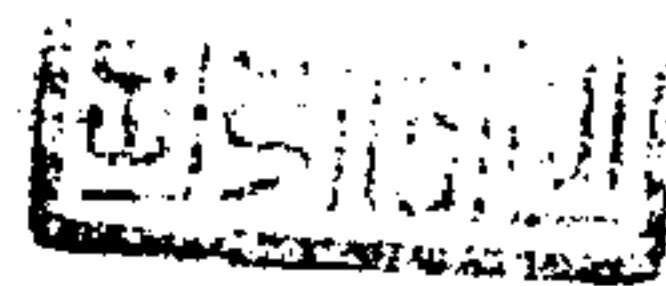
제 출 자 : 보 은 군 수

- 제안이유** : 지방공무원법 제2조(공무원의 구분)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을 본 군에서는 정·현원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은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함.
- 주요골자** : 본 군에서는 “경력직공무원”중 일반직·기능직공무원을, “특수경력직공무원”중 정무직·별정직공무원만을 관리하고 있어 본 조례는 불필요함
- 근거법령** : 보은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
- 사전 입법예고 결과** : 해당없음

붙 임 : 보은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(안)

보은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보은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(제정 1981.12.23 조례 제681호)는 이를 폐지한다.

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